

## [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]

### 1.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된 정보

(1)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 중

- ① 투자자가 보유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② 투자자가 예탁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③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
- ④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,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
- ⑤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인 준법감시인(이하 “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”이라 한다)의 승인을 받은 정보

(2)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중

- ① 부동산(지상권·지역권·전세권·임차권·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) 및 특별자산(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)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
- ②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

### 2.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대상 정보의 종류

(1)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

- ① 고유재산운용업무와 집합투자업·리츠운용업무
- ② 집합투자업과 리츠운용업무

(2)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

- ① 자본시장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
- ②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- ③ 집합투자재산,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

### 3.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

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

### 4.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

#### (1)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

- 가. 회사 내부 부서간의 이해상충 우려 거래
- 나. 회사와 투자자 또는 거래상대방과의 이해상충 우려 거래
- 다. 회사와 임직원간의 이해상충 우려 거래
- 라.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우려 거래
- 마. 회사임직원과 투자자간의 이해상충 우려거래

#### (2) 대응방안

- ① 임직원이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미리 해당 투자자에게 알리는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춘 후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하여야 함
- ②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매, 그 밖의 거래를 아니하도록 조치함
- ③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